[양식2] [공사,용역] 긴급입찰사유서

# 긴급입찰사유서

■ 중앙조달 (추정가격 1억이상 원칙)　□ 자체공고

## □ 사업개요

- 사업명: 2027~2029년 특수밀폐실험동(4동) 안전관리 용역
- 예산액: 1,878,000,000원
- 사업기간: 2027년 01월01일 ~ 2029년 12월 31일까지

## □ 긴급입찰사유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입찰사유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19호, 제4조 2항(6, 7호)에 근거하여 건강한 성인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진단·연구를 특수밀폐실험동(BL3)에서 운영하고 있음.

* BL3 시설 : **탄저균, 페스트균,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인체에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병**을 **진단·연구 시설**

- 이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진단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수밀폐실험동(BL3)이 공백기 없이 차년도 1월 1일부터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4호에 근거하여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2026년　10월　23일

생물안전평가과장　손 태 종